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4 선고 2022가단1206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변론 종결2024. 6. 19.

판결 선고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이하 '채납자'라 한다)과 C은 사촌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인 D의 처이다.

나. 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E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완도군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1))와 그 지상 G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의 세금 체납

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1	부가가치세	2015.1기	2020. 7. 31.	2015. 6. 30.	6,202,070	7,550,880
2	부가가치세	2015.2기	2020. 9. 30.	2015. 12. 31.	9,382,430	11,282,180
3	종합소득세	2015	2021. 4. 30.	2015. 12. 31.	39,691,790	45,645,420
4	부가가치세	2016.1기	2020. 9. 30.	2016. 6. 30.	3,947,370	4,746,590
5	부가가치세	2016.2기	2020. 9. 30.	2016. 12. 31.	1,702,500	2,047,050
6	종합소득세	2016	2021. 9. 30.	2016. 12. 31.	9,672,210	10,760,310
7	부가가치세	2017.1기	2020. 9. 30.	2017. 6. 30.	4,429,990	5,326,940
8	종합소득세	2017	2021. 9. 30.	2017. 12. 31.	7,418,810	459,670
9	양도소득세	2018	2019. 12. 31.	2018. 8. 31.	1,220,602,250	1,528,830,230
10	부가가치세	2018.1기	2018. 10. 31.	2018. 6. 30.	9,732,560	13,425,870
11	부가가치세	2018.1기	2020. 9. 30.	2018. 6. 30.	5,734,880	6,896,150
12	부가가치세	2018.2기	2018. 10. 25.	2018. 10. 25.	5,342,000	7,393,100
13	부가가치세	2018.2기	2019. 5. 31.	2018. 12. 31.	220,450,510	291,545,450
14	종합소득세	2018	2020. 12. 31.	2018. 12. 31.	20,741,360	24,474,800

1	부가가치세	2015.1기	2020. 7. 31.	2015. 6. 30.	6,202,070	7,550,880
15	종합소득세	2018	2021. 11. 15.	2018. 12. 31.	8,446,300	9,269,740
16	양도소득세	2022	2022. 6. 30.	2022. 2. 28.	1,113,990	1,147,140
합계	1,574,611,020	1,970,801,520				

2.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극재산	부동산(토지, 건물)	충남 천안시 동남구 L	79,000,000	개별주택가격
충남 천안시 동남구 M	607,200	개별공시지가		
전남 완도군 N	59,637,200			
예금	O조합(계좌번호 1 생략)	201,365,992	사해행위당시 예금잔액	
소계(①)	340,610,392			
소극재산	조세채무	조세채무(국세)	1,318,517,0402) <표1> 소제기일 현재 소외 B의 국세채납내역 순번 1~11번 고지세액 합계액.	실 채무액
P조합 Q지점 채무	30,000,000			
은행채무	R조합 채무	17,544,099		

적극재산	부동산(토지, 건물)	충남 천안시 동남구 L	79,000,000	개별주택가격
소계(②)	1,366,061,139			
사해행위당시 순자산(③=①-②)	▲1,025,450,747			
사해행위(4)	현금	이 사건 현금증여액	150,000,000	
채무초과(⑤=③-④)	▲1,175,450,747			

2) 피고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 명의 계좌번호 O조합(계좌번호 1 생략)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룬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와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혁재

1) 전라남도 완도군 F 대 1644m², I 대 697m², J 172m², K 695m²였는데, 2023. 12. 11. 위 F 토지에 합병되었다.

2) <표1> 소재기일 현재 소외 B의 국세체납내역 순번 1~11번 고지세액 합계액.